



상속세과세제도 해설

전 재 원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 행정사무관

I. 상속세의 의의

1. 상속의 의의

상속이란 자연인의 사망이나 사망여부가 불확실한 인정사망(객관적 정황이나 증거로 보아 사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실종으로 인하여 법률상 정해진 상속인이 사망자(피상속인)에게 속하였던 모든 재산상의 지위 또는 권리의무(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되는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의 순위

민법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다

가. 제1순위자 : 직계비속

직계비속이 여러 명 있는 경우 존수가 같으면 그 직계비속들은 동 순위의 상속인이 되고, 존수가 다르면 존수가 가까운 직계비속이 먼저 상속인이 된다.

직계비속은 자연혈족, 법정혈족, 혼인중의 출생자, 기혼·미혼의 아무런 차별이 없다. 또한 상속개시 당시 태아가 있는 경우 태아의 경우도 상속에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 유복자도 직계비속이 된다.

나. 제2순위자 : 직계존속

직계존속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촌수가 같으면 동 순위의 상속인이 되고 촌수를 달리하면 최근친이 먼저 상속인이 된다.

다. 제3순위자 : 형제자매

형제자매는 남녀의 차별, 기혼·미혼의 차별, 자연혈족과 법정혈족의 차별, 동복과 이복의 차별을 묻지 않으며 형제자매의 수가 여러 명인 때에는 동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라. 제4순위자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으면 공동상속인이 된다. 예컨대 3촌이 되는 방계혈족으로는 백숙부, 고모, 외숙부, 이모, 질 등이 공동상속인이 되며, 4촌이 되는 방계혈족으로는 종형자매, 고종형제자매, 외종형제자매, 이종형제자매 등이 공동상속인이 된다.

마. 배우자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순위 상속인과 동 순위가 되고 제1순위가 없는 때에는 제2순위 상속인과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되며, 1·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바. 특별연고자의 재산분여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경우 상속인 수색공고기간내(2년이상 기간)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 가정법원은 법률상의 상속인이 아닌 자의 청구에 대하여 상속재산을 분여한다.

- i)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자
- ii) 피상속인을 요양간호한 자
- iii)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자(사실혼관계배우자, 사실상 양자, 장기간 피상속인의 요양간호종사자)

사. 국가에 귀속

법률상 상속인이 없고, 상속인 수색공고기간 만료후 2월이내 재산분여를 청구하는 자가 없는 경우는 상속인이 부존재하므로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3. 상속분

상속분은 보통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계수적 비율에 의하여 표시한다.

상속분에는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정하여지는 지정상속분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법정상속분이 있다.

가. 지정상속분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유류분에 반하는 지정을 할 수 없으며 만약 유류분에 반하는 지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침해를 받은 유류분권리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법정상속분

동 순위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인은 균분으로 하는데, 출가한 여자비속의 경우에도 남자와 동일한 상속분이 인정된다. 또한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시 각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한편,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피대습상속인의 상속분에 의한다. 이 때 피대습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 그 상속분은 피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정한다.

다. 대습상속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자의 순위에 대신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배우자도 함께 동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4. 상속세 과세체계

상속세및증여세법은 ‘거주자의 사망의 경우에는 모든 상속재산을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상속재산의 범위에 있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또한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어 유산과세형 상속세제를 취하고 있다.

5.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상속개시일 현재 국내 주소를 둔 자 및 1년이상 거주한 자)인 경우와 비거주자인 경우에 따라 구분되므로 상속인이 거주자·비거주자인지 여부는 불문한다.

거주자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과세하게 되므로 무제한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겠으며,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한하여 과세하게 되므로 제한납세의무자라고 할 것이다.

6. 상속세의 납부의무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며, 그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재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중 상속인·수유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포함한다.

II. 상속재산가액

1. 본래의 상속재산

토지·건물·예금 등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

함한다.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소멸하는 것은 제외하므로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증에 의해 개인사업을 영위하다가 사망한 경우 동 사업체를 평가할 때는 영업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상속재산의 의제 및 추정

가. 의제상속재산

① 생명보험금 또는 손해보험금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받는 보험금,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 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지급 받은 보험금을 말한다.

② 신탁재산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다만,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제외한다.

또한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③ 퇴직금 등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각종법률(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한 유족연금·유족보상금·유족일시금 및 재해보상금 등은 제외한다.

나.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인출한 금액에 따라 소명대상기간을 차등적용(1998년 관련 규정 개정)하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 받은 것으로 추정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i) 1년 이내 : 재산종류별로 2억원 이상 ~5억원미만

ii) 2년이내 : 재산종류별로 5억원이상

재산의 종류별이란 ㉠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위 ㉠,㉡외의 기타재산 등 3종류로 분류한다.

재산처분·인출금액의 범위는

i) 재산처분 : 상속개시일 전 1년(또는 2년)이내 실제 수입한 금액

ii) 금전등 인출 : (인출금액-예입금액) ⇒ 순인출액이 원칙적으로 소명대상임

※ 예입금액등이 당해 통장·위탁계좌등에서 인출된 금전이 아닌 것은 제외

② 채무부담의 경우

i) 1년이내 : 채무부담액이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

ii) 2년이내 : 채무부담액이 5억원이상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서류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때에 변제여부의 확인은 이자지급사실, 담보설정사실 등을 조사하여 확인한다.

③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①, 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할 경우에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추정한다.

㉠ 피상속인의 재산처분금액이나 인출된 금전 또는 채무부담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2억원

다음의 사례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한다.

i) 피상속인이 처분재산 및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ii)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iii)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iv)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v) 피상속인이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

지 아니하는 경우

3. 사전증여재산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은 증여당시 현황에 의한 평가가액으로서 합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증여세액으로 공제한다. 이때에 상속세 합산과세대상인 사전증여재산의 범위는 수증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고, 수증자가 상속인 외의 자인 경우에는 5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다.

4. 비과세 상속재산

- ① 전사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망, 공무의 수행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사망
-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농지개량조합, 공공도서관·공공박물관 등)에 유증한 재산
- ③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 지정문화재
*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면적도 비과세함(00.12.31 개정)
- ④ 민법(§1008의 3)에 규정된 재산중 피상속인이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 9,900㎡(3,000평)이내의 금양임야, 1,980㎡(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 및 족보와 제구
 - i) 분묘·금양임야를 2002.1.1이후 상속받은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비과세함(다만, 분묘·금양임야중 비과세가 허용되는 면적기준은 종전과 같음)
 - ii) 분묘의 수에 관계없이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함
 - iii) 상속개시후에 금양임야와 묘토로 사용하기로 한 재산은 상속세 비과세대상이 아님
- ⑤ 정당법에 의해 정당에 유증 등을 한 재산
- ⑥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타 유사한 것으로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유증 등을 한 재산
- ⑦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기타 유사한 것으로서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
- ⑧ 상속재산중 상속인이 신고기한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 ⑨ 우리사주 조합원이 2000.12.31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액면가액이 500만 이하에 상당하는 주식

5. 공과금 · 장례비용 · 채무 공제액

가. 공과금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 · 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납부 또는 납부할 가산금, 가산세, 체납처분비, 벌금, 과료, 과태료 등은 공과금이 아니다.

나. 장례비용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서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하고,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까지만 공제한다. 다만, 2002.1.1. 이후 상속이 개시하는 분부터는 500만원 범위내의 납골사용비용은 장례비로 추가 인정된다.

장례비용이라 함은 시신의 발굴 및 안치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과 묘지구입비(공원묘지 사용료 포함), 비석, 상석 등 장례에 직접 소요된 제반비용을 말한다.

다. 채 무

- 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
- ② 상속개시일 현재 소비대차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미지급 이자는 채무로서 공제되나 상속개시일 이후 기간에 대한 지급이자 및 법인세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따라 계상한 인정이자 과세대상은 부채로 공제하지 아니한다.
- ③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중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이고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채무로서 공제한다.
- ④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0년이내에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 ⑤ 피상속인이 연대채무자인 경우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액은 피상속인의 부담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하다.

상속세과세시 채무의 존재를 입증하는 방법으로는 i)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금융기관

의 채무는 당해기관의 채무존재 확인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하고, ii)기타 채무(사채 등)등은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출에 관한 제반증빙 등에 의하여 채무부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6. 과세가액 불산입액

가.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 ①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및 기타 공익목적사업에 출연한 재산으로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 종료일부터 6월내) 출연한 경우에는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법령상 또는 행정상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 이전의 지연 및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를 말한다.
- ②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출연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중 1인이라도 공익법인의 이사가 되거나 중요사업내용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게 되면 상속세를 부과한다.
- ③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5% 초과분은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이 경우에 5% 초과 출연주식의 계산방법은 다음을 합(㉠+㉡+㉢)하여 계산한다.
 - ㉠ 출연하는 주식
 - ㉡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주식
 - ㉢ 출연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공익법인이 동일법인 주식을 5%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출연받은 경우에는 5%초과보유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2001.1.1.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30대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성실공익법인이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당해 공익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이 경우의 ‘성실공익법인’이라 함은 운용소득의 90%이상을 매년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공익법인을 말하고,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이라 함은 출연자(특수관계인) 및 당해 공익법인을 합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최대주주인 경우로서 출연자(특수관계인)가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임원이 아니어야 한다. 다만, 임원의 경우 임원총수의 5분의 1(최소 1명) 범위내에서 예외가 인정된다.

특수관계에 속하는 임원의 범위는 i) 이사회 구성원 전원, 청산인 ii)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iii) 감사 또는 위의 자와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 ④ 출연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거나 그 재산에서 얻은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가액으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나. 공익신탁한 재산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신탁법에 의한 공익신탁으로서 종교·자선·학술 및 기타 공익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을 말한다.

공익신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i) 공익신탁의 수익자가 공익법인 등이거나 그 공익법인 등의 수혜자일 것
- ii) 공익신탁의 만기일까지 신탁계약이 중도해지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할 것
- iii) 공익신탁의 중도해지 또는 종료시 잔여신탁재산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다른 공익신탁에 귀속될 것

Ⅲ. 상속세 과세표준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이때에 상속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하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2001.1.1이후 상속개시분에 한함)에는 기초공제만 2억원 적용된다.

1. 기초공제

일반적으로 2억원을 기초공제한다. 다만, 사업상속이나, 영농상속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상속공제가 허용된다.

가. 다음의 요건을 갖춘 사업상속의 경우에는 사업상속재산가액중 1억원을 한도로 추가공제한다.

- ①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사업에

종사한 자가 가업상속재산 전부를 상속받은 사업

- 피상속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제조업 등의 업종
- 소득세법(§168) · 법인세법(§111) 및 부가가치세법(§5)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

②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5년전부터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 등의 50%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 가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규정된 업종중 다음 업종은 제외

- i) 농업 및 임업, 어업
- ii) 숙박 및 음식점업(특별소비세법 §1④에 규정된 과세유흥장소에 한함)
- iii) 부동산업중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나. 다음의 요건을 갖춘 영농상속의 경우에는 영농상속재산가액중 2억원을 한도로 추가공제한다.

피상속인 상속개시 2년 전부터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영농 등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전부를 상속받은 재산

- i)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 (비과세 · 감면 및 소액부정수 포함)
- ii) 초지법에 의한 초지
- iii)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 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 (보안림 · 채종림 및 천연보호림의 산림지 포함)
- iv) 어선법의 규정에 의한 어선
- v)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권 (수산업법 §8①의 공동어업의 경우 제외)
- vi)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어업권('02.1.1이후 상속분부터 적용)

① 피상속인 요건

- i)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로서 농지 · 초지 · 산림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 군 · 구(농지 · 초지의 경우 소재지 연접 시 · 군 · 구를, 산림지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포함)에 거주하는 자
- ii) 어선 선적지, 어장에 가까운 연안의 시 · 군 · 구(연접한 시 · 군 · 구 포함)에 거주하는 자

② 상속인의 요건

- i)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
- ii) 위 피상속인 거주지 요건과 동일한 요건을 갖춘 자
- iii)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등에 의한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 또는 교육법에 의한 농업·수산계열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자

다. 상속세의 추징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상속재산 또는 영농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업 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추징한다.

- ① 가업(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 가업·영농상속공제액 전부를 추징
- ② 가업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text{가업상속 공제금액} \times \frac{\text{가업상속받은 재산중 처분 재산가액(상속개시 평가액)}}{\text{가업상속재산가액(상속개시 평가액)}}$$

- ③ 영농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text{영농상속 공제금액} \times \frac{\text{영농상속받은 재산중 처분 재산가액(상속개시 평가액)}}{\text{영농상속받은 재산가액(상속개시 평가액)}}$$

상속세추징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 i) 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사망하거나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 ii) 가업상속재산(가업에 직접사용 하는 재산)이 수용, 국가 등에 양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
- iii)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이나 농업·축산업·임업 및 어업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배우자 상속공제

가. 공제액

- ① 신고기한내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한 자

(이 경우에는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는 분할등기 등을 배우자상속공제의 요건으로 함)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 배우자가 상속받은 총 재산가액 - 채무 등

㉡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

: (배우자 법정상속분 - 배우자가 사전증여 받은 재산가액) : 30억원 한도

* ㉠과 ㉡중 적은 금액 공제

② 상속재산을 분할신고하지 않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는 5억원임

③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상속포기분 포함)일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는 5억원이 된다.

3. 인적공제

가. 자녀공제

자녀공제는 미성년자공제와 중복적용이 가능하고, 장애자공제는 자녀·미성년자·연로자공제 및 배우자공제와 중복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그 외의 인적공제는 중복적용 할 수 없다.

자녀공제는 자녀 1인에 대하여 3천만원을 공제(모든 자녀에 대해 적용)한다.

나. 미성년자공제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동거가족(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형제자매)중 20세 미만자인 미성년자 : 500만원×20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

다. 연로자공제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60세이상자는 1인당 3천만원을 공제한다. 따라서 배우자가 연로자공제 요건인 연령이 60세 이상이 되더라도 연로자공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라. 장애자공제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장애인 : 500만원×75세에 달하기 까지의 연수

4. 일괄공제

상속인과 수유자는 「기초공제와 기타인적공제의 합계액」과 「일괄공제액(5억원)」중 큰 금액으로 선택적으로 공제가 가능하다.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하며, 신고한 기타인적공제액이 일괄공제보다 적은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는 일괄공제를 배제하고 「기초공제와 기타인적공제의 합계액」으로만 공제한다.

5. 금융재산 상속공제

가. 순금융재산가액(금융재산가액－금융채무)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순금융재산가액 전액을 공제한다.

나. 순금융재산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순금융재산가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되, 그 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000만원을 공제하고,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이 경우 ‘금융재산’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한 다음의 예금, 적금 등을 말한다.

- i)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금전신탁재산·보험금·공제금·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상증칙§8(금융실명법상 모든 금융기관)에서 정한 것
- ii) 비상장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
- iii) 발행회사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모집·매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 회사채

6. 재해손실공제

상속신고기한 이내에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의 손실가액을 공제하며, 손실가액에 대한 보험료 등의 수령 또는 구상권 행사에 의해 당해 손실가액 상당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난이라 함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에 규정한 화재·붕괴·폭발·환경오염사고 및 자연재해 등의 재난을 말한다.

7. 상속공제 종합한도

상속세과세가액-[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 + 사전증여재산(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액-재해손실공제액]

IV. 상속세 산출세액의 계산

1. 산출세액

상속세의 산출세액은 상속세 과세표준(상속세의 과세표준이 20만원 미만인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에 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산출세액 = 과세표준×세율+세대생략 상속할증과세

2. 상속세의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6,000만원

3. 세대생략 상속 할증과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 산출세액에 30% 할증가산한다. 다만, 대습상속(민법§1001)의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text{세액} = \text{산출세액} \times \frac{\text{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재산가액}}{\text{총상속재산가액}} \times 30\%$$

V.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

1. 기납부증여 세액공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 하되, 다음을 한도로 한다. 다만,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이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가.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인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경우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며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때는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text{증여세액} = \frac{\text{각자 납부할 상속세액}}{\text{상속인} \cdot \text{수유자별 상속세 과세표준}} \times \frac{\text{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닌 경우

$$\text{증여세액} = \frac{\text{상속세 산출세액}}{\text{상속세 과세표준(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포함)}} \times \frac{\text{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2.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상속개시후 10년 이내에 재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text{공제세액} = \text{전의 상속세 산출세액} \times [\text{재상속분의 재산가액} \times (\text{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div \text{전의 상속재산가액}) \div \text{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times \text{공제율}$$

※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함

☞ 공제율 : 매년 10%씩 체감율 적용

재상속 기 간	1년내	2년내	3년내	4년내	5년내	6년내	7년내	8년내	9년내	10년내
공제율 (%)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3. 신고세액공제

신고기한내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자진납부를 공제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무납부시에도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다만, 사전 증여재산을 합산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신고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circ \text{ 신고세액공제액} = \{(\text{상속세 산출세액} + \text{세대생략가산액}) - (\text{문화재 등의 징수유예 세액} + \text{증여세액공제} + \text{단기상속공제 등} + \text{감면세액})\} \times 10\%$$

VI. 신고와 납부

1. 신고기한 및 자진납부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 부터 6월 이내(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자진납부하여야 한다.

2. 가산세

가. 신고불성실 가산세

$$\circ \text{ 가산세액} = \text{산출세액} \times (\text{정부가 결정} \cdot \text{경정한 과세표준} \div \text{무신고 또는 미달신고한 금액}) \times 20\%$$

나. 납부불성실 가산세

$$\circ \text{ 가산세액} = (\text{미납부세액} \times 10\%) + (1\text{년 경과 후 미납부세액} \times \text{미납일수} \times 0.0003\%)$$

- 미납일수의 계산 : 신고납부기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자진납부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한도 : 미납부세액의 20%